

안전한 부산항만, 커지는 국민행복



# 부산항보안공사

수신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여객선 등 위해물품 반입금지 협조 요청

1. 귀 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

가.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33조 1항 1호

나. 항만 내 여객선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관한 고시 제2조(위해물품)

[시행 2020. 9. 1.] [해양수산부고시 제2020-135호, 2020. 8. 28., 제정]

3. 위 호 관련, [별표] 항만 내 여객선 반입금지 위해물품(제2조 관련\_항만 내 여객선 반입 금지 위해물품에 관한 고시)을 붙임과 함께 발송하오니,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협조 요청 드립니다.

붙임. [별표] 항만 내 여객선 반입금지 위해물품(제2조 관련\_항만 내 여객선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관한 고시). 끝.

부산항보안공사



수신자 스타라인, JR큐슈, 팬스타라인닷컴, 고려훼리, 부관훼리

대리 공창준 센터장 11/10 김길수

협조자

시행 보안운영실-4170 ( 2023. 11. 10. ) 접수 ( )

우 48940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4, 3층 ( 중앙동4가 , / https://www.bpsc.co.kr  
연안여객터미널 )

전화 051-719-6061 /전송 0303-3444-9205 / justcool@bpsc.co.kr / 공개

[별표]

항만 내 여객선 반입금지 위해물품(제2조 관련)

1. 객실 반입금지·위탁수하물 반입가능 물품

구 분	비 고
<p>가. 총, 소총기, 그리고 심각한 상해를 입히도록 고안된 탄환을 발사하는 다음을 포함하는 장치 또는 이와 비슷한 장치</p> <p>1) 권총, 연발권총, 라이플총(소총), 엽총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총기</p> <p>2) 압축공기총, 가스총전식 총</p> <p>3) 총기의 구성부품</p> <p>4) 실제 무기로 착각될 수 있는 복제 및 모방 총기</p> <p>5) 신호탄용 총</p> <p>6) 활, 석궁, 화살, 창, 표창</p>	<p>·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, 해당 여객선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시키고, 총알과 분리한 후,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</p> <p>· 총기의 구성부품 중 조준경은 객실 반입 가능</p> <p>· 장난감용 활 석궁 화살 물총은 객실반입 가능</p>
<p>나. 다음을 포함한 기절을 시키거나 마비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치</p> <p>1) 총포용 및 막대형 전자총격기 등의 총격 장치</p> <p>2) 동물용 전자총격기</p> <p>3) 최루가스, 고추스프레이, 산성스프레이, 동물퇴치용 스프레이 등 대상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화학물질 및 스프레이</p>	<p>· 위탁수하물로 전자총격기를 반입할 경우, 해당 여객선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</p> <p>· 최루가스 등 호신용 스프레이류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, 1인당 1개(100ml 이하)까지만 가능</p>

**다. 다음을 포함한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**

- 1) 도끼, 손도끼, 큰 식칼 등 자르기 위해 고안된 물품
- 2) 쇠빙도끼와 얼음을 깨는 송곳
- 3) 면도칼날, 커터칼날, 맥가이버칼(접이식칼), 외과용 메스
- 4) 3)을 제외한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칼
- 5)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가위
- 6)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무술용 장비
- 7) 검과 사브르(펜싱경기에서 사용되는 칼)

· 둥근날을 가진 버터칼,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, 안전면도날, 전기면도기 및 선내식 전용 나이프 (선사 소유에 한함)는 객실 반입 가능

**라. 다음을 포함한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공구**

- 1) 망치, 쇠지레
- 2) 드릴(휴대용 무선 드릴 포함)과 드릴부품
- 3) 드라이버, 끌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손잡이를 제외한 금속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도구
- 4) 톱(휴대용 무선 전기톱 포함)
- 5) 볼트건과 네일건

**마. 다음을 포함한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폭발물과 인화성물질 및 장치**

- 1) 탄약류(실탄, 공포탄 등)
- 2) 복제 또는 모방 폭발장치

· 탄약류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하는 경우 해당 여객선 운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

**2. 객실 반입금지·위탁수하물 반입금지 물품**

※ 다음을 포함한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물질 및 장치

구분	비고
가. 70도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	
나. 뇌관	
다. 기폭장치 및 도화선	
라. 지뢰, 수류탄, 기타 군사 폭발 용품	
마. 폭죽, 조명탄	
바. 연막탄	
사. 다이너마이트, 화약 및 플라스틱 폭발물	

아. 토치

자. 인화성 가스, 인화성 액체

차. 전염성·생물학적 위험물질 및 독성물질  
(독극물, 농약 등)

· 단, 연료와 분리된 경우 휴대  
및 위탁반입 가능

3.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물품 또는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이더라도 해당 항만의 보안검색감독자가 보안검색 중에 위해(危害)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선박 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위탁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다.
4. 반입코자 하는 물질이 화학성·유독성 물질인 경우에는 승객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시하여 안전한 물질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하다.